

## 2019년 사업예산편성 세부지침

### □ 범례

1. 여비는 ‘여비별도’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만 지급 \*지급기준 : <여비 규정> 준용
2. 원고료, 강의료 등 수당은 모든 내부 직원(특별회계 직원 포함)에 대하여는 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외부 수탁과제의 경우 100% 지급하되, 원장의 별도승인을 얻어 예산집행 단가, 지급 요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3. 이 지침은 원장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4.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집행은 2019년 국비 예산 교부 결정 내역을 우선한다.

### □ 인건비 (일반회계)

예산목	항 목	구 분	직급	지 급 단 가 (원)	비 고
기간제 근로자 보 수	기간제 (1인/월)		A	3,500,000	▶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
			B	2,343,000	▶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
			C	2,109,000	▶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

예산목	세목	통계목	구 分	단위	지 급 단 가 (원)	비 고
복리 후생비	사회 보험 부담금	사회 보험 부 담 금		1인	총급여액의 10%	▶ 4대보험료 10%(기관부담금)
인건비	퇴직연금 부담금	퇴직연금부 담 금		1인	총급여액의 1/12	
여비	국내 여비	국내여비		1인	실비	▶ 실 지급액은 본원 여비 규정 준용 ▶ 직원 및 기간제, 외부인 통합 적용
회의운 영비	회의비	오 찬		1인	20,000 이내	▶ 다과비 5천원/인 포함
		만 찬		1인	30,000 이내	▶ 문체부 국비집행기준 ▶ 다과비 5천원/인 포함, 최대 30천원이내
		행사/회의비		1인	30,000 이내	▶ 다과비 5천원/인 포함, 최대 30천원이내
심사수당	회의 참석 수당	회의 참석 수당	방문 자	1회	50,000 ~200,000	▶ 자문자를 방문하여 자문 받는 경우 ▶ 기타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
			초청 자	1회	100,000 ~300,000	▶ 자문자를 초청하여 자문 받는 경우 ▶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자문



예산목	세목	통계목	구 分	단위	지 급 단 가 (원)	비 고
교육부 예산	교육비	교열비	200자 원고지 1매	한문 문집	1,000 ~3,000	▶ 교열·윤문비의 경우 한문을 제외한 외국어는 <일반>의 130~150% 적용 ▶ 교열·윤문비는 동일 원고의 필자나 역자에게 지급 불가
				한문	1,000	▶ 한글 교열비는 200자 원고지 1매당 1,000원으로 조정 지급
		탈초비	자당	A	150(자당)	▶ 초서, 간찰
				B	100(자당)	▶ 초서, 고문현
				C	70(자당)	▶ 행초서
				D	50(자당)	▶ 필사본
	표점 및 교감	해제비, 빌문비	1회		300,000 ~1,000,000	▶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원 기준으로 산정
		표점비	200자 원고지 1매	표점 및 이점	3,500	
		원문입력	자당		35	
	학술대회 관련 (포럼, 세미나 등 포함)	번역·교감평가	1회/ 10항목		500,000 ~1,500,000	
		발표비	기조 발표	1회	300,000 ~1,000,000	▶ 원고료, 여비 포함 ▶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며 원장의 별도승인을 받아야 함
			주제 발표	1회	300,000 ~1,000,000	▶ 원고료, 여비 포함 ▶ 학술대회, 워크숍 등의 발표 및 발제문 발표비로,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며, 원장의 별도승인을 받아야 함
		지정토론, 좌장	1회		200,000 ~300,000	▶ 여비포함
		사회	1회		200,000	▶ 여비포함 ▶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부 전문 사회자 등에 한정하며 원장의 별도승인을 받아야 함
		정리 기록비 (녹취등)	200자 원고지 1매		1,000	